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최종공포일 2021.8.11.>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계약규정 제24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시행하는 기술용역의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한 용역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이하 ”수행능력 평가“라 한다)”와 “기술제안서에 의한 평가(이하 ”제안서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 ② 수행능력평가는 계약규정 제61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대상용역으로서 제3항에 의한 제안서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③ 제안서평가는 계약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방법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④ 계약규정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 대상 용역 중 부실방지 및 품질보증 등 용역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 3 조 (입찰공고)

- ① 계약담당자는 제2조에 의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 평가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평가기준 등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2013.7.3 개정>
 1. 세부평가기준
 2.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필요한 사항
-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4 조 (입찰참여신청)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제 5 조 (입찰참여신청 자격제한)

계약담당자는 입찰참여 신청자의 자격을 계약규정 제34조에 의거 제한할 수 있다.

제 6 조 (평가기준 및 배점)

- ① 수행능력평가 및 제안서평가에 대한 평가항목·평가요소·세부평가요소·배점·과락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01.01>
- ②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③ 해당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평가기준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의 배점합계는 가·감점을 포함한 점수를 총점으로 한다. 다만, 최고득점자의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0.06.04>

제 7 조 (당해용역 세부평가기준)

- ① 발주부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용역에 적합한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평가함으로써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발주부서장은 당해 용역의 규모, 성질, 내용, 하도급인 경우 모계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의 평가항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사유를 발주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별표 2의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 및 가·감점’은 조정할 수 없다.
 2. 별표 2의 세부평가기준의 평가등급 구간 수 및 구간 간의 배점비율은 조정할 수 없다. <개정 2018.01.01>
 3. 별표 2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조정은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각 세부평가기준의 기준배점에 20% 이내이어야 하며,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추가 시 평가항목 전체 기준배점의 20% 이내로 한다. <개정 2018.01.01>
 4. 용역의 특성상 평가항목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기준 배점을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만점으로 부여할 수 있다.
- ③ 별표 2의 세부평가방법의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실적 기준년수는 공고일 기준 준공일이 최근 10년으로 하고, 평가항목 유사용역수행실적외의 세부평가 기준의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의 기준년수는 공고일 기준 준공일이 최근 5년 이내인 것으로 한다. <개정 2015.06.05, 2018.01.01>
- ④ 발주부서장은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 하게 경력, 실적 및 요건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발주부서장은 제2조에 정한 용역의 계약을 의뢰할 때에는 당해용역의 세부평가 기준 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계약의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평가방법)

-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입찰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의 확인을 위한 보완서류를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실사결과 및 증빙서에 의해 평가점수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05, 2018.01.01>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 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3.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단, 이미 제출된 서류의 확인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평가서류로 추가할 수 없다.
- ② 제6조의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와 가·감점 중 해외사업수행실적을 제외한 평가요소는 계약 담당부서에서 평가한다. <개정 2019.05.31, 2019.11.11>
- ③ 제2항 이외의 수행능력평가 및 제안서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한다.
 1. 발주부서장은 계약관리시스템(K-CSM)을 사용하여 전문기술분야로 지정되어 있는 평가위원진 중 2인 이상의 평가위원을 무작위로 선임한다. 다만, 당해 사업본부 직원 또는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면 평가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진 외의 해당 분야 실무경력 보유자로서 평가능력이 있는 직원을 평가위원 전원 또는 일부 인

원으로 선임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사내에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04.04>

2. 계약담당자와 발주부서장은 선정된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유의사항관련 교육 : 계약담당자
 - 세부평가 내용 및 기준관련 교육 : 발주부서장 <개정 2015.06.05>
3. 평가위원은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그 평가결과(평가점수 입력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해당 부분 작성 및 관련 세부평가자료와 병행 첨부 등록)를 계약관리시스템(K-CSM)에 입력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04>
4.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이 제출한 평가결과와 계약부서 평가항목의 평가결과 를 종합한 평가결과를 계약관리시스템(K-CSM)에 입력(평가점수 입력 및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첨부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04>
- ④ 각 평가항목의 평가요소별의 평가점수는 전체 평가위원의 평가점수의 합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 ⑤ 제안서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수행능력평가결과 제11조 제2항에 의거 선정된 제안적격자가 제3호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의한다. 단,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행능력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개정 2015.06.05>
 2. 각 평가요소별로 별표 4에 따라 상대 평가한다. <개정 2018.01.01>
 3. 기술제안서는 서식 12 “기술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8.01.01, 2019.04.04>
- ⑥ 계약담당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여를 신청한 자의 제출서류를 신청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필요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9 조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 ①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유사용역수행실적, 시설/장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점수를 산정하고, 경영상태, 품질관리능력, 가점 및 감점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단, 원자력의 품질관리능력은 각 공동수급체 모두 적격이어야 하며, 부적격시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01.01, 2019.04.04, 2019.11.11>
 2.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최소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한다.
 3.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요청하지 않는 입찰 공고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 평가항목을 만점 처리한다. <신설 2015.06.05>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다만, 참여기술자는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
- ③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 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 재평가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제 10 조 (용역수행실적의 증명)

- ① 용역수행실적의 증명은 해당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엔지니어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링진흥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위탁관련업무 수행기관이 발행한 확인서(또는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5.06.05>
- ② 국외에서 수행한 실적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증명서에 주재국 공관의 확인을 받거나 해당 계약서 사본(요약본 포함)과 외화입금증명서에 외국환 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당해 용역의 용역내용, 규모, 도급 금액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③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한다.
 - ④ 발주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거나, 자체용역인 경우에는 용역이 준공(진행 중인 용역 포함)되었음을 확인 가능한 관계서류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용역계약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공동계약에 의한 실적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제 11 조 (적격자 등의 선정)

- ① 수행능력평가의 경우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78.57 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하고, 수주계약에서 하도급금이 설계금액의 82% 이상일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 또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6.667 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1.08.11>
- ② 제안서평가의 경우 수행능력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제안적격자로 선정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시 이후에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3. 제14조에 의한 경우
 4. 해산, 영업정지, 파산·부도 등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5. 용역의 특성상 제6조의 평가항목 중 과락기준을 정한 경우로서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 원자력의 품질관리능력 평가결과 부적격 판정인 경우 <신설 2018.01.01>
 7.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제 12 조 (평가결과 통지)

- ①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해당 입찰참여 신청자에게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입찰참여 신청자는 자사의 평가결과를 발주자가 통보한 날로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자사의 평가 상세내용을 서면으로 열람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계약담당자의 오류·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내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3 조 (재평가)

- ①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평가 요청건에 대해 3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유(평가기준 적용 오류, 담합, 허위서류 등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는 요인)가 있는 경우, 재평가 요청 을 하지 않은 입찰참여 신청자 전체에 대해 재평가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으며 재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한다. <개정 2015.06.05>
 1. 재평가는 계약담당자가 발주부서장에게 요청하며, 그 평가방법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발주부서장은 계약담당자가 요청한 사항 외의 재평가를 임의로 진행할 수 없으며, 요청사항 외의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재평가 사유 등을 반드시 사전 통보하여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05>

3. 재평가 시 평가위원은 기존 평가위원 외에 1인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6.05>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재평가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평가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 ③ 재평가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 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 ① 당해 입찰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 · 변조 · 허위 · 소속인력의 이중 등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이전인 경우에는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2.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후 입찰실시 이전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취소
 3.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결정통보를 취소
 4.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발주자 계약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 15 조 (참여기술자의 교체 등)

- ①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 등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기술자가 퇴직·질병등의 사유로 부득이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참여기술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참여기술자가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제 16 조 (관련규정 등의 참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6.05>

부칙 (2013.07.03)

이 지침은 2013.7.3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3.07.03]

부칙 (2015.06.08)

이 지침은 2015.6.5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5.06.05]

부칙 (2017.10.11)

이 지침은 2018.1.1.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8.01.01]

부칙 (2019.04.04)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이 기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9.04.04]

부칙 (2019.11.11)

이 기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9.11.11]

부칙 (2020.06.04)

1.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 개정시행일 현재 결재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본부칙신설 2020.06.04]

부칙 (2020.12.22)

이 기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20.12.22]

부칙 (2021.08.11)

1.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기준 개정시행일 현재 결재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본부칙신설 2021.08.11]